

해외납세자 세무 안내

본자료는 **2021년 6월**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**한국세법과 조세조약을 확인하고** 각국 과세관청 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

- **(구분의 중요성)** 과세소득의 범위, 적용세율, 과세방법 등이 다름

거주자 여부	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	「소득세법」상 비거주자
과세소득의 범위	전세계 소득	국내원천소득에 한정
적용세율	누진세율 (6~42*%)	20%, 10%, 2%,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
과세방법	종합과세 신고·납부 (일부 분리과세 원천징수)	분리과세 원천징수*
해외금융계좌 신고	○	×
자료제출 의무	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관련 자료	없음

* 2021.1.1.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최고세율(과세표준 10억 원 초과)
45% 구간 신설

* 국내사업장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

- **(이중거주자인 경우)**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정

한국법상 현지법상	비거주자	거주자
비거주자	양국 비거주자	① 한국 거주자
거주자	② 현지국 거주자	③ 이중거주자

- ①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구분
- ②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국 거주자로 구분
- ③ 상기 ① 및 ②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·비거주자를 판정

2. 조세목적상 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

- 한국 「소득세법」상 “**거주자**”란 **국내에 주소**를 두거나, **183일 이상 거소**를 둔 개인을 말하고, “**비거주자**”란 **거주자가 아닌 개인**을 말함

▶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

- **주소**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
- **거소**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

- 한국 「소득세법」상 **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 기준**

1. 주소로 판정 (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: 거주자)	2. 거소로 판정 (체류기간 충족 시 : 거주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-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-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*인 경우 *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-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

3.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(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%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**거주자로 봄**

- ▶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



거주자·비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(國籍)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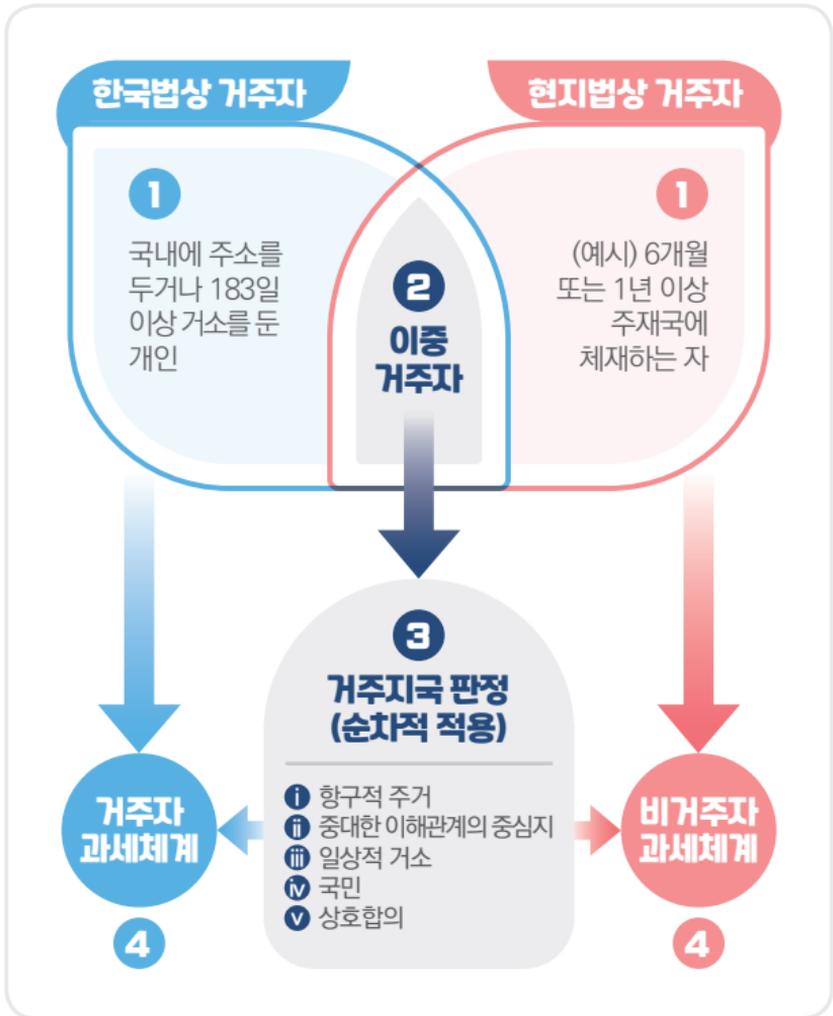
● 세계 각국의 거주자 규정 : OECD 웹사이트 참조

▶ <http://www.oecd.org/tax/automatic-exchange/crs-implementation-and-assistance/tax-residency/>

● 해외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세목적상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폭넓은 납세의무를 부담

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(조세조약 적용)

- ▶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 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(이중과세)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
 - 이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(③)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



▶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니 [국세법령정보시스템(<http://txsi.hometax.go.kr/docs/main.jsp>)] - 법령 - 조세조약]링크 참조

3. 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

●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: 전세계 소득

- ▶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함
 - ※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
- ▶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자산 소재지국에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 하여야 함
 - ※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

●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분류과세

● 이중과세문제 해결 : 외국납부세액공제

- ▶ **(이중과세)** 국외원천소득이 현지(원천지국)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도 합산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
- ▶ **(외국납부세액)**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
 - (세액공제방법)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도로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5년간^① 이월공제가 가능
 - ① 2021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기간이 끝나더라도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(21.1.1. 이후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)
 - (필요경비산입 방법) 국외원천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외국납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

4. 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

- **(신고기한)**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·납부하여야 함
*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
- **(신고방법)*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¹ 또는 손택스²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

Hom_etax. 홈택스

- 1 홈택스 > 로그인 > 홈택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문 선택 > 신고서 작성하기
- 2 홈택스 > 로그인 > 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



1

Hom_etax. 손택스

- 1 손택스 모바일 앱 > 로그인 >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선택
- 2 손택스 모바일 앱 > 로그인 >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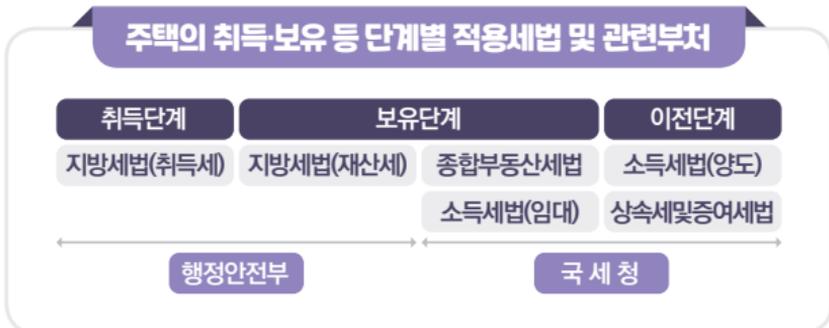


2

- **(납부방법)**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,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
 - ▶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*할 수 있음
- *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 / 금융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(통신사 인증서, KB모바일 인증서, 카카오톡, 삼성패스, 페이코) 필요

5. 주택임대소득 과세안내

● 주택과 세금



* 주택 취득, 보유·임대·양도, 상속·증여와 관련된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 : <https://nts.go.kr/upload/ebook/20210325/ecatalogm.html>

● 주택 임대소득 (2019년 귀속부터 2천만원 이하도 전부 과세)

▶ 과세기준

1주택	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(보증금은 과세안함)
2주택	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(보증금은 과세 안함)
3주택	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*을 넘는 경우 * 소형주택(주거전용면적 40㎡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)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(2021년까지)

▶ 임대유형별

월세	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,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, 2주택 이상 보유자
보증금	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* 소형주택(주거전용면적 40㎡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)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(2021년까지)

- ▶ **(사업자등록)**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 (2021년 신고)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*가 부과

*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의 0.2%

- ▶ **(신고방법)**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(6~42%)와 분리과세(14%)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(6~42%)하여 신고

* 세율 : (20귀속) 6~42% → (21귀속) 6~45%

6. 해외직접투자·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

- (제출 의무자)

해외현지기업,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

* (제출의무 면제)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

- (제출대상 자료)

1

해외현지법인 명세서

2

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

3

손실거래명세서

4

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
5

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명세서

- (제출 방법) 매년 6월 30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- (미(거짓)제출한 경우) 과태료 부과

- ▶ 해외직접투자 : 건별 5백만원(5천만원 한도)
- ▶ 해외부동산 : 취득·처분가액 및 운용소득 등의 10% (1억원 한도)
- ▶ 취득자금 미소명시 : 미소명 금액의 20%(19년 귀속분부터)



7. 해외금융계좌 신고

- **(신고의무자)**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

* (신고면제)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1년 (18년 보유분까지는 2년)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 면제

- **(신고기준금액)**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**5억원***을 초과

* 2018년 신고대상(2017년 보유분)까지는 10억원

* 2022.1.1.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

- **(신고방법)**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**6월 1일부터 6월 30일**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

- **(미신고에 대한 제재)**

과태료 부과^①, 소명의무^②,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^③

1

과태료 부과

미(과소)신고 금액의 최고 20%(20억 원 한도)



2

소명의무

미(거짓) 소명 금액의 20% 과태료 추가 부과



3

명단공개 및 형사처벌

미(과소)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(과소)신고 금액의
13~20% 벌금 부과



- **(상세자료)** 「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」*

* 국제법령정보시스템 > 전자도서관 > 발간책자 > 국제조세

8. 정보교환

●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

- ▶ (개요) 한·미·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



- ▶ (대상 국가) 우리나라는 '16년 미국을 시작으로 '19년 96개국, '20년 102개국과 교환을 진행 하였으며, '21년 110개국과 교환예정

*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은 OECD AEOI포털(영문)에서 확인가능 <https://www.oecd.org/tax/automatic-exchange/international-framework-for-the-crs/>

● 교환 대상 및 정보

한·미 금융정보자동교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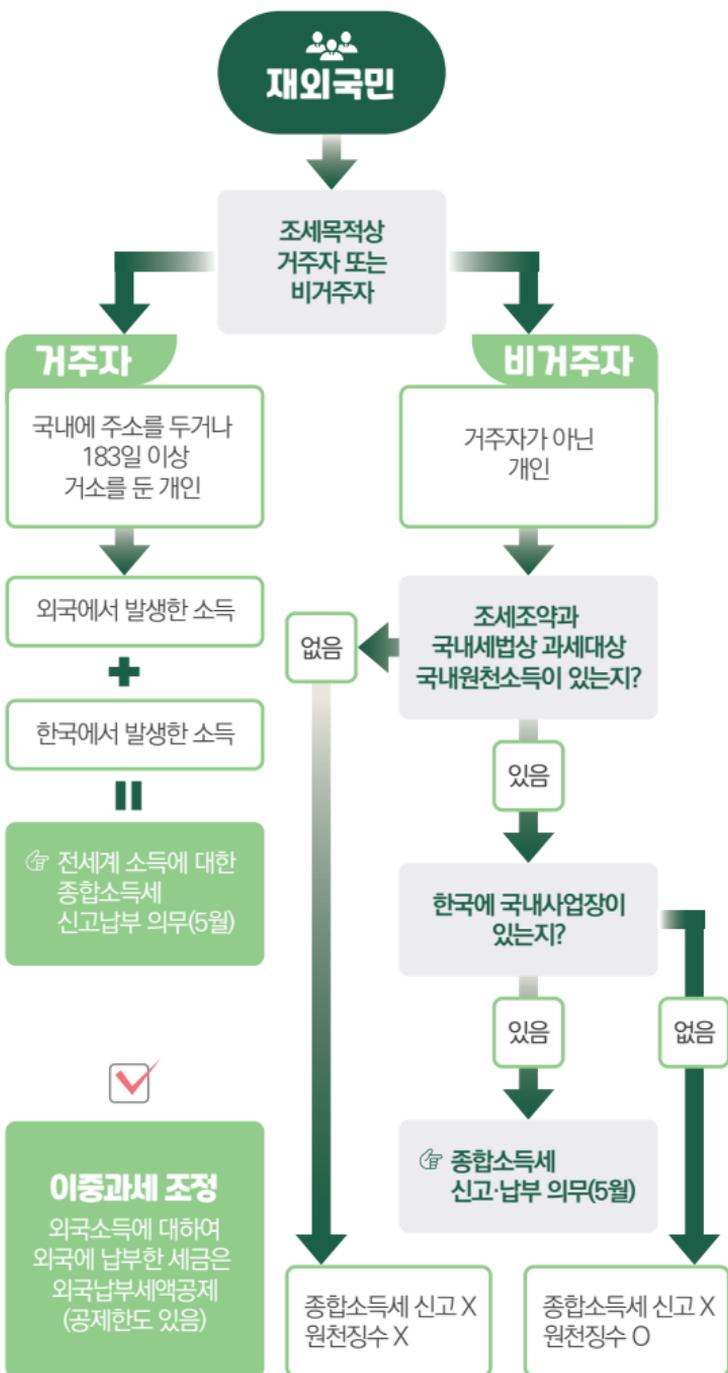
교환대상		한국 → 미국		미국 → 한국
대상 계좌	개인	기존*	(원칙)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(예외) 25만 달러 이하 보험·연금계약 계좌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•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
		신규*	(원칙) 모든 금융계좌 (예외) 5만 달러 이하 예금·보험계약 제외	
	법인	기존	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
		신규	모든 금융계좌	
교환 정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계좌잔액, 이자·배당소득 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 원천소득 등

* 기존계좌:2014.6.30. 이전 개설 계좌 / 신규계좌:2014.7.1. 이후 개설 계좌

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

교환대상		체약상대국 → 한국	
대상 계좌	개인	• 모든 금융계좌	
	법인	기존*	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
		신규*	모든 금융계좌
교환 정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계좌잔액, 이자·배당소득 등 	

9. 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등



재외국민도 조세목적상 한국의 **거주자**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, 한국의 **비거주자**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

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

- ☞ 해외직접투자·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 제출(6월) → 6. 해외직접투자 등 ...
- ☞ 해외금융계좌 신고(6월) → 7. 해외금융계좌 신고

해외납세자 세무 안내

본자료는 **2021년 6월**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**한국세법과 조세조약을 확인하고** 각국 과세관청 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

추가 문의 필요 시

국세상담센터 **126**

국세상담센터(126)

+ 82(국가번호) - 64(지역번호) - 126

인터넷 납세서비스
Hometax.

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페이지(인터넷 상담)

<https://www.hometax.go.kr>

국세법령정보시스템

국세법령정보시스템

<https://txsi.hometax.go.kr>

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